옥천군 공고 제2020-724호

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6월 1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조례에 있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제명을 개정

○ 지원협의체 구성 시 환경상 영향정도,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

3. 주요골자

○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제명에 명시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

○ 지원협의체 구성 기준을 환경상 영향정도,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변경 (안 제18조제2항제1호)

4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환경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455, FAX : (043)731-2914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·운용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제3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의하고”를 “시작하고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“읍·면별”을 “읍·면의 행정리별”로, “3인”을 “3명 이내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호의 주민대표”를 “주민대표”로,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지원협의체 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의하고”를 “시작하고”로 한다.

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	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·운용 등에 관한 조례
제4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3. (생 략) 4. 기타수입금	제4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의 수입금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·② (생략)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기타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④ ~ ⑥ (생 략)	제5조(기금의 용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그 밖에 ---------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회의) ① (생 략)	제1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 ---------- 시작하고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)	제18조(지원협의체 구성·운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협의체 위원은 군수가 군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,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해당 읍·면이 2개소이상인 경우 : 해당 읍·면별로 주변영향지역 거주 지역주민 각각 3인, 해당 읍·면 군의원 1인	1. ---------- 읍·면의 행정리별 ---------- 3명 이내---------- 1명
2. 해당 읍·면이 1개소인 경우 : 해당 읍·면 주변영향지역 거주 지역주민 5인, 해당 읍·면 군의원 1인	2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5명---------- ---------- 1명
3.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	3. 주민대표---------- ---- 2명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회의) ①·②(생 략)	제20조(지원협의체 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---------- 시작하고----------.
④(생 략)	④(현행과 같음)
제25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	<삭 제>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